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 (船舶平衡水)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2053

제출연월일: 2024. 7. 22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'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'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'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'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 (船舶平衡水)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」의 개정) 선박평형수(船舶平 衡水)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호 중 "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"를 "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"로, "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"를 "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중 "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"를 "제1호, 제2호,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"로 한다.

2의2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"을 "제1호, 제2호,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"으로 한다.

제2조(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의 개정)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"를 "제1호, 제2호, 제2호의2 또는 제3호"로 한다.

- 2. 이 법 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의2. 이 법 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제3조(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개정)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"를 "제3호,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"로 한다.

- 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3의2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"를 "제 3호,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"로 한다.

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제3호 또는 제4호"를 "제3호, 제4호 또는 제4호의2"로 한다.

- 4. 이 법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
- 4의2. 이 법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8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"제3호 또는 제4호"를 "제3호, 제4호 또는 제4호의2"로 한다.

제10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
4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22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	
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	
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이 법을 위반하여 <u>징역 이상</u>	2 <u>징역형의</u>
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	<u>실형을 선고받고 그</u>
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	
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	
다) <u>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</u>	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
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	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u>한 자</u>	
<u><신 설></u>	2의2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
	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
	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	4 <u>제1호, 제2호, 제2</u>
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	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
<u>해당하는 자가</u> 있는 법인	사람이
제2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해양	제2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
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	
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	

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 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~ 8. (생 략)

② (생 략)

1
<u>제1호, 제2호,</u>
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
하는 사람이 있는
2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했 혅 제20조(등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제20조(등록의 결격사유)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이 법 또는 「해양환경관리 2. 이 법 또는 「해양환경관리 법 |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법 | 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 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 아니한 사람 2의2. 이 법 또는 「해양환경관 <신 설> 리법」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4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 4. ----- 제1호, 제2호, 제2 호의2 또는 제3호-----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람이 있는 법인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71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	
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	
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삭 제	
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	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
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	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
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	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
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	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
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	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
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	지 아니한 사람
되지 아니한 자	
<u><신 설></u>	3의2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
	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
	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임원 중에 제1호, <u>제3호 또는</u>	5 <u>제3호, 제3호</u>
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	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
법인	사람이
제7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해양경	제7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
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
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. 다만, 법인의 임 원 중 제71조제1호, <u>제3호</u> 또 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~ 8. (생 략)
- ② (생략)
- 제81조(조사기관의 결격사유) 다 제81조(조사기관의 결격사유) --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으로 지정될 수 없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이 법 또는 「물환경보전」 법 . • 「대기환경보전법 .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

_		
_		
_		
_		
_		
_		
1.		
	<u>제3호, 제</u>	_
	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	-
	<u>는 사람이</u>	
7	- 0 /처체기 가이\	

- 2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이 법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 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

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<신 설>

- 5. 대표이사가 제1호, 제3호 또 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
 제82조(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) 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 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. 다만,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

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
한 사람
4의2. 이 법, 「물환경보전법」
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을
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
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
기간 중에 있는 사람
5 <u>제3호, 제4</u>
호 또는 제4호의2
세82조(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)
①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제3호,</u>
제4호 또는 제4호의2

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- 제10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제10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~ 3. (생략)
 - 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<u><신 설></u>

5. • 6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
 - 4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5. 6. (현행과 같음)
 - ②·③ (현행과 같음)